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1074호
- 나. 발 의 자 : 김원태 의원(찬성자 45명)
- 다. 발 의 일 : 2023년 8월 14일
- 라. 회 부 일 : 2023년 8월 21일

2. 주문

- 정당현수막 관련 규제의 통일성 확보와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키고 기타 관련 세부 규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신설 등 현재 시행되고있는 정당 활동 보장 위주의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을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여 헌법 정신에 맞게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3. 제안이유

- 정당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금지·제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안 시행

전에 비해 관련 민원이 2배로 증가하고, 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정당 현수막이 국민의 생활불편과 다량의 현수막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현수막의 관리에 한계를 가져옴
- 따라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특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키고 기타 자세한 규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하여 주민 생활안전 조성 및 보행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이송처

- 「국회」,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및 의회

6. 검토 의견

가. 건의안 개요

- 이번 ‘주민 생활환경 조성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정당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금지·제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 '22.12.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로 인한 민원과 안전사고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에 정당현수막 특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키고 기타 자세한 규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촉구 하는 것임

나. 검토 내용

(1)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제정 목적¹⁾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조²⁾는 도시지역, 도로, 공항, 교통수단 등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³⁾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역·장소·물건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 조항에서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예외 규정을 두어 광고물의 허가·신고 및 광고물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법(22.12.11, 시행)은 제8조제8호를 신설하면서 광고물의 허가·신고 및 광고물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

-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나. ~ 타. (생략)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 기둥, 라. 가로수, 마. ~ 카. (생략)

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제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정당이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 가. 정당의 명칭
 - 나. 정당의 연락처
 -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 라. 제2호에 따른 표시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 이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전에는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등을 규제받는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옥외광고물법('22.12.11, 시행)은 「정당법」 제37조제2항⁴⁾에서 명시한 광고물등 중 '현수막'에 한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현수막 단속 기준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⁵⁾

4)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5) (의안번호 21157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행정안전위원회, 2022.5.26.)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은 현수막을 통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 제8조제8호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현수막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제8호 본문에 규정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정당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내용(법률 제18876호, 2022. 12. 11. 시행) 〉

개정 이전	개정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현수막도 일반 현수막과 같이 신고를 거쳐(제3조)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제4조) ※ 교통신호기, 가로등, 가로수 등에는 설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정당현수막은 신고를 거치지 않고, 장소 제한 없이 설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표시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시행령」 정당 현수막에 ①정당 명칭, 정당·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을 기입하여 ②15일 이내로만 설치

(2) 정당현수막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당의 옥외광고물 설치 수량과 규격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불법 현수막 철거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면서 각 정당은 홍보효과가 큰 현수막을 다수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결국 정당현수막 난립⁶⁾과 이로 인한 시민 피해로 민원이 급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참고 : '빛장 풀리자 난립' 정당 현수막, 시민 안전마저 위협(NEWSIS, 2023.3.26)
 [르포+] 난립 현수막 피해 걷는 시민들...이게 합법? (JTBC뉴스, 2023.5.21.)

-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⁷⁾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현행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3개월 사이 1만 4,19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6) 「[르포+] 난립 현수막 피해 걷는 시민들...이게 합법?」, JTBC뉴스, 2023.5.21.
 7)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3.06.12.

〈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 현황 〉

구분	법 시행 전 ('22.9.~ '22.12.)	법 시행 후 ('22.12.~ '23.3.)	구분	법 시행 전 ('22.9.~ '22.12.)	법 시행 후 ('22.12.~ '23.3.)
계	6,415	14,197	제주	64	138
서울	1,645	1,381	경기	1,299	3,490
부산	511	1,269	경북	156	672
대구	573	985	경남	187	857
인천	499	872	전북	115	719
광주	33	165	전남	183	597
대전	469	997	충북	134	473
울산	213	524	충남	202	451
세종	-	35	강원	132	572

자료 : 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3.4.21.)

- 또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3개월간 정당현수막을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신체(목, 발 등)가 현수막 끈에 걸리는 사고, 현수막 과다 부착으로 인한 가로등 전도 사고, 운전자 시야방해 등 총 8건의 정당현수막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
- 정당현수막 난립에 따른 보행자와 차량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표시기간 만료된 현수막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⁸⁾, 일반시민이 게시하는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민원이 폭증⁹⁾하고 있음

(3) 대응현황

① [국회]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 국회에서도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3.8.20일 기준으로 총 8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을 확인하였음

8) 「28t 폐현수막, 10%도 재활용 못했다」, 서울신문, 2023.4.26.

- 1분기 서울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4만 7,000장이며(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은 2만장), 재활용된 건은 9.6%에 불과, 전체 폐현수막의 54.6%가 소각, 11%는 매립됨.

9) 「국회, 정치현수막 무제한 허용하더니...민원 1만4천건 폭주」, 매일경제, 2023.4.16.

〈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 발의 현황 〉

구분	발의자	발의일	현행대비 추가 규율 사항	
1	최영희의원안	2023.3.13.	대통령령에 개수 제한 추가	소관위 상정 (2023.5.16.)
2	김성원의원안	2023.3.13.	대통령령에 개수·규격 제한 추가	
3	송석준의원안	2023.3.17.	대통령령에 개수·이격거리 제한 추가	
4	박병석의원안	2023.3.28.	표시 방법·기간, 장소·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	미상정
5	김미애의원안	2023.4.14.	현수막을 설치할 때 미리 시장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통지 방법, 설치 금지 장소, 개수, 규격, 간격추가	
6	이만희의원안	2023.4.18.	대통령령에 개수·규격·설치장소 추가, 위반 광고물 조치, 행정대집행 근거 규정에 법 제8조의 적용배제 광고물 추가	미상정
7	민형배의원안	2023.8.17.	대통령령에 개수·규격, 장소, 표시방법 및 기간 당 표시·설치 제한 추가, 정당 무소속 현수막도 예외대상 추가	미상정
8	박성민의원안	2023.8.17.	지정구역으로 장소를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	미상정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2023.6.1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추가정리

- 국회에 계류중인 8건의 옥외광고물법 개정발의안은 공통적으로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 외 개정안별로 현수막의 규격, 설치 이격거리, 설치 장소 등 위임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위임 방식과 관련해서도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차이가 있음
-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현수막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인 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므로 지역별 정당현수막 정비 편차를 최소화하여 지역간 표시방법 차이로 인한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겠으나¹⁰⁾,
- 지방자치단체별 도시환경(인구, 도로 등 인프라, 도·농 지역 등)이 상이하어 정당현수막이 도시미관에 미치는 지역별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외 세

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2023.5.16.) 검토보고서

부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적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②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는 정당·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23.5.8일부터 배포·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사항에 머무르는 등 법적효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당현수막의 정비가 어려운 상황임

〈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설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을 작성하여 게시 ※ 정당명칭을 반드시 기재하되 정당 로고만 표시하는 경우 인정X ※ 천을 뒹대거나 수기로 표시기간 임의 연장한 경우 인정X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 - 교통 신호기·도로 표지 가림 금지 - 보행자 통행 및 운전자 시야 방해 장소에는 2m 이상 설치 - 가로등별 현수막 2개 이하 설치
처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방법 및 설치방법 위반 시, 정당에 시정요구, 미이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처분 -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지정게시대 설치 권고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2023.6.12.) 추가정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 서울시, 부산시 등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없앤 현행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필요성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붙임1 참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23.2.15. 제

177차 정기회의)에서도 ‘정당현수막 관련 법 개정요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당현수막의 수량과 설치장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적극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음

-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각 정당 4개 이하로 제한하고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공포(23.6.8. 시행) 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개정 조례를 “현행법상 정당현수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규정이 없어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했고, 이에 맞서 인천시의회도 “규제 없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헌법상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¹¹⁾함

(4) 건의 필요성

-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 횡단보도 등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등 실제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이후 관련 민원이 2배로 증가하고 안전사고도 8건 발생하였으며, 플라스틱 합성섬유가 주성분인 폐현수막은 자연분해되지 않고 소각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므로 다량의 현수막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문제 또한 심각¹²⁾하다 할 수 있겠음
- 인천시민의 94%가 “정당현수막이 교통, 보행, 안전, 도시미관 등을 위협하고 있어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¹³⁾하였고, 송파구의 ‘정당 현수막 구

11) 인천시의회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통해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살피달라고 요청하는 것

12) 「국회, 정치현수막 무제한 허용하더니...민원 1만4천건 폭주」,(매일경제, 2023.4.16.)

민 인식 조사' 결과 구민의 93%가 정당현수막을 도시 미관과 국민 정서를 해치는 공해로 인식하는 등 철거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개정('22.12.11, 시행)이 시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자 하는 정당현수막의 순기능마저 가리고 시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임

- 현수막을 관리하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하고, 국회에서도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 개수, 규격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관리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나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 현실적인 정비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행정안전부 모두 세부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정치·정당인은 민생을 살피고 정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등 보다 안전한 사회,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그 존재의 이유가 있으므로,
- 이번 건의안이 촉구하는 바에 따라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편의적인 규정인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관련 규제의 통일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되,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3) 「인천시민 94%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제한해야" 응답」(한국일보, 2023.8.17.)
「송파구민 93%, 비방?안전 위협 정당 현수막 즉시 철거해야」(송파구청 보도자료, 2023.8.23.)

붙임 1

법 개정안 관련 자치단체 의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3.5.16.)

지자체	위임 범위	위임 방식
서울특별시	▶ 장소, 개수 제한 필요	-
노원구	▶ 장소, 개수, 규격 등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제한 필요 ▶ 설치 이전 표시사항 및 게시장소, 수량, 규격을 서면 제출	▶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역 내 정치적 관여 가능성 제한 필요
부산광역시	▶ 장소, 개수, 규격 제한 필요, 교차로·횡단보도 주변 설치 금지 필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역 간 표시방법 차이로 인한 정당과의 마찰 우려 해소 필요
부산진구	▶ 규격, 개수, 장소 제한 필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자체 형평성 제고, 눈치보기식 제한 우려 해소 필요
해운대구	▶ 장소, 개수, 설치방법(설치 높이, 글자크기) 제한 필요	-
대구광역시	▶ 장소, 개수, 규격, 이격거리 제한 필요	-
대구 북구	▶ 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 폐지 필요 - 정당활동에 관한 특례가 지나치게 넓고 필요성 및 긴급성이 빈약하므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삭제 필요	
인천광역시	▶ 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 폐지 필요 -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 민원 증가,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환경 오염 등을 고려하여 폐지가 바람직함	
연수구	▶ 장소(지정게시대), 개수, 규격 제한 필요 ▶ 기상특보 발효시 철거 조항 필요	-
대전광역시	▶ 장소, 개수, 규격, 이격거리 제한 필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일괄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 정당현수막은 전국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조례로 정하면 차별논란 등 문제 발생 우려
울산광역시	▶ 장소, 개수 제한 필요, 일부 세부사항은 조례로 위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발의안에 동의 - 현수막의 표시방법, 기간, 장소, 개수를 제한하고 세부적인 규제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실질적인 정치현수막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지자체	위임 범위	위임 방식
경기도 수원시	▶ 장소, 개수, 규격, 이격거리 제한 필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급하게 해결 필요 - 제한지역 발굴, 인근지자체와 조례와 비교분석 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경기도 김포시	▶ 장소, 개수, 규격 등 제한 필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전국 동일하게 제한 필요
경기도 군포시	▶ 장소, 개수 제한 필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일관성 확보 필요
경기도 여주시	▶ 장소, 개수 제한 필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시급하게 해결 필요
경상남도 창원시	▶ 장소, 개수, 규격, 이격거리 제한 필요	▶ 시·군·구 동일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
경상남도 거창군	▶ 장소, 개수, 규격 제한 필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군구 동일 지침 적용 필요
경상남도 합천군	▶ 장소, 개수, 규격 제한 필요	▶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타당
강원도 원주시	▶ 설치방법 및 제한으로 폭넓게 규정 필요	▶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타당